

---

## IV.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의 가부

---

### 1. 해석론

우리법 해석론으로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이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전제하에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sup>54)</sup> 결론적으로 위 견해에 동의하지만, 논거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이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이 법률이 정해 놓은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은 가능하지 않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sup>55)</sup> 그렇다면 유언으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법률규정<sup>56)</sup>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언을 유증이라 한다(제1074조 이하). 생명보험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수익권의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 - 수익자 변경행위 - 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

---

54) 한기정(2017), p. 736

55) 윤진수(2018), p. 500

56) 프랑스 보험법 제132-8조,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77조, 일본 보험법 제44조, 퀘벡주 민법 제2446조, 이탈리아 민법 제1920조 제2항은 모두 유언(또는 사인처분)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독일 민법 제332조도, 요약자(보험계약자)가 낙약자(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반에서, 사인처분에 의한 제3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치게 형식적이다.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을 통해 형성되었고, ② 보험사고 발생 직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해약환급금청구권의 변형물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나 특별수익 산정 시 생명보험금을 고려하는 것도(본문 VI. 참조), 실질적 관점에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상속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무방식의 일방적 단독행위에 의해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유언처럼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일방적 단독행위에 의해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大는 小를 포함한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전체유추(Gesamtanalogie)를 근거로 - 허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상법에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2. 관련문제

아래에서는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석론상 쟁점들을 살펴본다.

①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734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을 통지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 상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생전행위의 방법으로 수익자 지정·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57)58)</sup> 이 경우 통지의 주체를 유언집행자나

57)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한 뒤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58) 참고로 일본 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수익자 변경사실 통지의 주체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여기서 상속인의 의미는 상속인 전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

상속인 전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수익자로 지정된 자(상속인 중 1인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닐 수도 있다)가 그 사실을 통지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sup>59)</sup> 상법 제734조 제1항이나 민법 제450조 제1항(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관련 규정)에서 통지의 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허위의 통지를 막기 위함인데,<sup>60)</sup>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의 경우 유언의 요식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어느 정도 방지되기 때문에 통지의 주체를 좁게 볼 이유는 없다. 다만 위조된 유언서에 의해 거짓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상법 제7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이 경우 보험자는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민법 제470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② 유언의 방식으로 수익자 지정·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지정·변경 의사 자체는 명확히 인정된다면 유언이 아닌 통상의 무방식의 일방적 단독행위에 의해 수익자 지정·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유언에 의한 의사표시와 분리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상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이기 때문이다.<sup>61)62)</sup> 이렇게 보면 보험계약자의 진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나, 유언의 방식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결론은 부득이하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법리에 의하여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sup>63)</sup> 한편,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 후 유언이 철

고 상속인 1인이 통지해도 족하다고 봄. 保險法解説(2010), p. 318

59) 물론 상속인이 아닌 신수익자가 유언장(사본)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수익자 변경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음

60) 지원림(2017), p. 1233

61) 同旨 保險法解説(2010), p. 316(유언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이상 보험계약자(유언자)의 의사는 **유언으로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유언에 흠이 있어 유언자체가 무효라면, 보험수익자 변경도 무효라고 해석해야 함)

62) 참고로 유언의 철회는 새로운 유언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유언이 아닌 생전행위에 의하여 할 수도 있음(제1108조 제1항). 그런데 나중 유언으로 종전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 나중 유언이 방식을 준수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철회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함. 윤진수(2018), p. 528; 박윤직(2004), p. 241

63) 山本哲生(2009), p. 276. 흥미롭게도 퀘벡주 민법 제2450조 제1항 제1문은 유언이 방식 흠결로 무효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유언장에 담긴 수익자 지정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까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법이

회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유언철회의 의사에는 수익자 지정을 철회하는 의사도 담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sup>64)</sup>

③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에 관한 유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i) 가령 기존 보험수익자를 A로 지정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나의 전 재산을 B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한 경우, 이러한 유언에 수익자 변경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 유언서의 다른 기재사항 등을 고려할 때 “나의 전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sup>65)66)</sup> 수익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재산적 출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형식을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견상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언자의 두 개의 의사표시는 가급적 각각의 효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sup>67)</sup> 나중의 유언이 종전의 수익자 지정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분명하지 않는 한, 가급적 종전 의사표시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sup>68)</sup> ii) A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생명보

권이 필요한지는 의문임

64) 퀘백주 민법 제2450조 제1항 제2문은 그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65) 同旨 保險法解説(2010), p. 322; 輿石進(2009), p. 261. 그러나 보험자 입장에서 누가 보험수익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국면에서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해석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개별사정보다 통상의 의사에 기초해야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통상의 의사라는 반론으로는 岡田豊基(2010), p. 187.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도 갖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66)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B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하였다면, 당연히 수익자 변경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67) 참고로 이탈리아 민법 제682조(II testamento posteriore, che non revoca in modo espresso I precedenti, annulla in questi soltanto le disposizioni che sono con esso incompatibili. : 종전 유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나중 유언은, 종전 유언 중 나중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만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임)를 유추하여, 종전 수익자 지정과 나중 유언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가급적 두 의사표시가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Gregor Christandl(2016), p. 154

68) 퀘백주 민법 제2450조 제2항 제2문은 “유언에 담긴 수익자 지정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유언에서 문제된 보험증권을 언급하고 있거나 종전 수익자 지정을 철회한다는 유언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한, 유언 전에 이루어진 수익자 지정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험금도 포함하여 A에게 전 재산의 10%, B에게 전 재산의 90%를 나누어 준다.”고 유언한 경우 이를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을까?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선해(善解)하여 보험수익권 중 10%는 A에게, 90%는 B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sup>69)</sup> iii)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유언의 해석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하는 규범적 해석은 별로 문제되지 않고, 유언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문제된다.<sup>70)</sup> 그런데 유언을 해석하여 유언장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범적 해석을 통해 수익자를 결정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언자의 진의에 반하여 엉뚱한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자가 알 수 있었던 주변 정황이나 유언장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민법 제470조)를 통해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유언을 통해 종전 수익자 지정을 변경하려면 그 취지가 명백해야 한다는 조문으로서, 본문에서 밝힌 필자의 견해와 일맥상통함

69) 同旨 保險法解説(2010), p. 321

70) 윤진수(2018), p. 523